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 41호)

1996. 12. 20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1995.12.29, 법률 제 5099호)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6. 10.14, 대통령령 제15157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검사제도를 보완하며,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천연식품첨가물로 함(제4조).

나. 제품검사의 불합격사유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가공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2항).

다. 수입식품 검사방법에 서류·관능검사대상 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신설하여 수입식품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6).

라. 신선한 과실·채소류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썩었거나 상한 것이 있는 과실·채소류를 판매하기 전에 선별·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미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2항).

마.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제조업소 등은 개별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소는 비소·중금속 등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농약 등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개별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여 1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 및 별표8).

바.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 중 저열량식품에 한

함)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하여 동 식품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제40조 및 별표12, 제42조 및 별표13).

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중 제조·가공시설 및 위생관리상태 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동 업소의 제품에는 "우수업소제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아.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당해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및 별표1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첨가물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첨가물 중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판매 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2(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써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판매 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	1. 법 제7조 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되지·아니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2. 제1호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4조(자가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기준과 규격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 등은 법 제7조 제1	제4조(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 제2항 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의 제

현 행	개 정 안
항 및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 등은 법 제7조 제1항 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등 중 천연식품첨가물로 한다.
1. 유가공품·건강보조식품·인삼제품·특수영양식품·기타식품류〔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학적 합성품외의 첨가물 2. 별표 2에서 정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 3. 기타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으로서 국민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②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다. 1. 특수영양식품, 화학적 합성품 외의 첨가물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의 경우 : 국립보건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 기관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자가기준 및 규격대상식품 등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이를 인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자가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국립보건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검사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 기관이 행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 허위표시·과대광고 ..... 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 .....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외래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내용의 표시·광고	7. 외국어
8-13. (생략)	②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8.-1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② ..... 허위표시·과대광고로 ..... .
제7조(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 ① 법 제13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제품을 제조·수입(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7조(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 ① ..... 인삼제품류· ..... .
	② .....

현 행	개 정 안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분을 하는 자가 제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은 검사에 필요한 제품전량을 봉인하기 쉽도록 일정한 장소에 준비한 후에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검사의 신청은 검사에 필요한 제품전량을 봉인하기 쉽도록 일정한 장소에 준비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의 채취단위마다 1천2백원의 제품검사수수료를,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예정가 또는 수출가격의 1,0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수수료를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식품첨가물 ..... 인삼제품류 ..... 1천분 .....
제8조(검체의 채취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채취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채취한 검체를 적당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봉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인삼김치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을 제외한다)의 제조업자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보관용 검체를 해당 업소에서 6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삼제품류 .....
1.-5.(생략)	1-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제품검사의 방법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그 합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품검사의 방법 등) ①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1.-5. (생 략)	1-5.(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의 불합격사실

현 행	개 정 안
	을 통보받은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불합격사유가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의 보완후 재검사신청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서 전환
제10조(제품검사합격증지의 교부 등)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의 결과 합격통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검사신청량에 해당하는 제품검사합격증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교부하고,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판매단위가 10그램미만의 제품,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인 경우 : 소형 2.-4.(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10조(제품검사합격증지의 교부 등)① .... 1. .... 인삼제품류 .... 2.-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식품 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 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 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 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가. 농·임산물을 수확 또는 채취한 그대로의 것이거나 첨가물 또는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씻거나, 고르거나, 다듬거나,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숙성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단순가열한 것의	제11조(식품 등의 수입신고) ① .... 1. 수입신고서 가. .... 식품첨가물 ....

현 행	개 정 안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1) 나. 가목의 경우외의 식품 및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2) 다.(생 략) 2. (생 략)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식품 등에 한한다) 4. 품목제조허가증(신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증명서[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조방법설명서(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제조업소의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정밀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로서 식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신선한 식품류 가.(생 략)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2.·3.(생략) <신 설>	…… 나. …… 식품첨가물 …… …… 다.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 …… …… 5.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 …… …… ……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② …… …… …… …… …… …… …… …… …… 1. 신선한 식품류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3.(현행과 같음) 4. 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현 행	개 정 안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등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식품의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1.- 3. (생 략)	1.-3. (생 략)
4. 관능검사로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별 후 재수입신고	<삭 제>
5. 1호 내지 4호외의 경우에는 폐기	5. 제1호 내지 제3호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식품 등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 15조 .....
제12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2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1. 출입·검사 등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 8호 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③ 제1항 또는 제2항 .....

현 행	개 정 안
한다.	…….
제 13조(수거량·검사의뢰 등)	제 13조(수거량·검사의뢰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③ …… 인장 등 …….
④ 복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 14조(검사방법 등)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방법 등)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 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기준·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기준·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식품 등이 제1항제1호의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	③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

현 행	개 정 안
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 15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 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약품청장 ....
②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식품 등의 검사결과 제 14조제1항제1호의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 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 등의 검사결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 19조(자가품질검사) ① .... 다만, 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은 식품 등에 대하여는 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21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7조제5호 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식품 또는 첨가물은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식품첨가물) .... 첨가물 ..... .

현 행	개 정 안
1.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공품, 식육제품(단순포장육을 식육판매업소내에서 단순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어육연제품, 식용유지, 다류(낱개들이 소포장제품을 제외한다),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	1. ..... 어육제품 ..... 인삼제품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식품첨가물 ..... .
제21조의 2(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7조제5호의 나목의 (8)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이라 함은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제21조의2(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 나목의 (9) ..... .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삭 제>
4. - 7(생략)	
8.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 .
<신 설>	9.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

현 행	개 정 안
	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허가신청의 변경) ① ·② (생 략)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③ ..... .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대상품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10과 같다.	<삭 제>
제 25조(품목제조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2조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신청서에,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제조신고는 늦어도 제품생산개시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자가기준 및 규격대상품목에 한한다) 3. 유통기한 및 기간설정사유서 ②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품목제조허가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품목제조허가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고,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품목제조신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사유서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품목제조허가사항 등의 변경)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제품명·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와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별지 제23로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제품명·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이하 "주원료"라 한다)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변경보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5항의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① . . .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 32조(영업허가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13조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 31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치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식품제조·가공업허가 및 수리한 신고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처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 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법상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36조(위생교육대상자) ① ....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 이하 같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1인의 영업자가 2이상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3.(생 략)	2.·3.(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과 실시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7조(위생교육기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건강보조식품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동조2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및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단체	2. ....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동조제8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 2(교육시간)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제37조의 2(교육시간) ① ....

현 행	개 정 안
를 받은 후 선임신고후 2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식품위생관리인의 수)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50인 미만인 업종간에는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10인 미만인 때에는 1인의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38조(식품위생관리인의 수)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군(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일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이상의 식품군을 제조·가공하거나 2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식품군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50인 미만인 때에는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식품군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10인 미만인 때에는 공동으로 1인의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이라 함은 "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식품미생물학·수의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료학·수의공중보건학·식품화학 중 2과목 이상"을 말한다.	② 제16조제2항제2호 .
제40조(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40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43조(모범업소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의 위생등급은 영 제7조제8호의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하여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되,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의한다.	제 43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 1. 우수업소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에 의하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②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현 행	개 정 안
는 당해 업소의 외부 도는 내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구분하며, 동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준에 의하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느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철거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 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9조, 별 제63조 .
제55조(행정처분대장 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6조 내지 제59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55조(행정처분대장 등) ①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 관련)

1. 식품등의 검사

가.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라.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항생물질 등·농약·아플라톡신 또는 마비성패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원료검사시에 당해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9의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가) 성상·이물 : 1월마다 2회 이상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2) (1)외의 식품제조, 가공업자
(가) 식품 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
① 성상·이물 :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②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 : 6월마다 1회 이상
③ 항생물질 등·농약·아플라톡신·마비성패독 : 1년마다 1회 이상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3)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자
(가)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1월마다 1회 이상
(나)기구 또는 용기, 포장별 규격:1월마다 1회 이상

2.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제1호라목(1)의 영업자를 제외한다〕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로 2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 ·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 ·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 ·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 시설 등

(1)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 에프알피(FRP) ·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

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을 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검사실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위탁검사계약을 맺은 경우

(나) 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류·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속한다)·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식육제품 중 단순절단포장육만을 가공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식품의 특성별 필요시설

(1)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비하여야 한다.

(가) 유가공제품 및 식육제품(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 치즈, 베이컨, 건조저장육, 단순절단포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나) 두부(원료를 갈아 부수는 과정에서 성형틀에 투입되는 과정까지에 한한다)

(2) 식육제품의 제조가공실은 그 내부온도가 15℃ 이하로 유지되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중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중 연질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성형 및 충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4)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